

투자위험등급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b> 을 감안하여 <b>2등급으로 분류</b>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http://www.feynma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25년 02월 0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03월 21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5.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 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 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십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제외합니다.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

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호(주식) (펀드코드: 64932)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파인만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 및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주식 등 가격 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환헤지에 따른 위험, 인덱스 투자위험, 추적오차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b>투자목적 및 투자전략</b>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투자합니다 (단 해외주식에의 투자는 신탁재산의 60% 이상). 탄탄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 기업의 주식, 아시아 국가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또는 아시아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일본 제외)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 증식을 추구하며, S&P/KRX Asia 100지수를 추종하는 동시에, 국가와 섹터 및 종목별 투자모멘텀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b>분류</b>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b>투자비용</b>	<b>클래스 종류</b>	<b>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b>				<b>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b>					
		<b>판매 수수료</b>	<b>총보수</b>	<b>판매 보수</b>	<b>동종 유형 총보수</b>	<b>총 보수·비용</b>	<b>1년</b>	<b>2년</b>	<b>3년</b>	<b>5년</b>	<b>10년</b>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2%이내	1.638%	1.000%	1.920%	2.4065%	364	614	870	1,402	2,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D)	없음	2.138%	1.500%	1.920%	2.8593%	293	592	898	1,527	3,2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638%	1.000%	1.180%	2.4066%	247	500	759	1,297	2,768	
<p>(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등 포함,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주2) 종류 A형과 종류 D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02.07 ~ 25.02.06	23.02.07 ~ 25.02.06	22.02.07 ~ 25.02.06	20.02.07 ~ 25.02.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2007-02-07	25.44	4.87	-2.00	2.06	2.15
비교지수	2007-02-07	24.06	4.50	-1.55	3.11	2.93
수익률변동성(%)	2007-02-07	18.67	17.17	18.30	18.98	16.65

(주1) 비교지수 : S&P/KRX Asia 100 X 95% + call rate X 5%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연평균 수익률은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30 주식형) (%)				운용 경력 년수 (년)
			집합투자기 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오승훈	1991	책임운용 전문인력	20	865	27.61	N/A	27.61	6.70	5.78
김주호	1993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16	563	N/A	N/A	27.61	6.70	0.86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TI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인력'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http://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해외자산의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결과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후 원화의 가치가 해외 투자 대상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외화자산의 가치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져 손실이 발생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에 따라 해외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b>해외(일본제외한 아시아시장)의 주식</b>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덱스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시장(혹은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등 별도의 노력을

주요투자  
위험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b>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비교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의 표시통화인 미달러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타 투자대상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도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환헤지전략의 차이로 인해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비교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b>매입방법</b>	15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경과후: 4영업일 기준가 매입 (다만,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은 매입청구일을 기준으로 2020.10.05부터 시행)	<b>환매방법</b>	15시 이전: 3영업일 기준가로 7영업일 지급 15시 경과후: 4영업일 기준가로 8영업일 지급
<b>환매 수수료</b>	A, C1, C2, C3, C4, C5, C-e, C-w, C-i, 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C-p: 없음		
<b>기준가</b>	<b>산정방법</b>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b>공시장소</b>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b>과세</b>	<b>구분</b>	<b>과세의 주요내용</b>	
	<b>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b>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b> 입니다.	
	<b>수익자</b>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b>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b>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b>전환절차 및 방법</b>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류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2 수익증권으로 전환</li> <li>② 종류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3 수익증권으로 전환</li> <li>③ 종류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li> <li>④ 종류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C5 수익증권으로 전환</li> </ul>		
<b>집합투자업자</b>	파인만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3703-9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		
<b>모집기간</b>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b>모집·매출 총액</b>	10조좌
<b>효력</b>	2025년 3월 21일	<b>존속기간</b>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b>발생일</b>																										
<b>판매회사</b>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b>참조</b>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집합투자 기구의 종류</b>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종류(Class)</th> <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판매 수수료</td> <td>수수료 선취(A)</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b>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td> </tr> <tr> <td>수수료 미징구(C)</td> <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b>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td> </tr> <tr> <td rowspan="3">판매 경로</td> <td>온라인(e)</td> <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td> </tr> <tr> <td>오프라인</td> <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td> </tr> <tr> <td>온라인 슈퍼(S)</td> <td>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td> </tr> <tr> <td rowspan="4">기타</td> <td>보수체감 (CDSC)</td> <td>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td> </tr> <tr> <td>랩(w)</td> <td>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고액(i)</td> <td>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최초 납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r> <td>개인연금 (p)</td> <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 </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b>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b>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최초 납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b>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b>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최초 납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http://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http://www.feynma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 (영업보고서,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eynmanasset.com](http://www.feynman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http://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feynmanasset.com](http://www.feynmanasset.com))

# 〈목차〉

<b>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b> .....	13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3
3. 모집(판매)예정금액.....	13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13
5. 인수에 관한 사항.....	1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4
<b>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	1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7
4. 집합투자업자.....	17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7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8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20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20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24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6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30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3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7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0
<b>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b> .....	44
1. 재무정보.....	44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51
<b>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b> .....	55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55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57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57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8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9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9
<b>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b> .....	60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60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62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63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6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7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7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	649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649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649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961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961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961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961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763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938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938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A175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803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판매)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판매)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판매)기간 : 추가형으로서 모집개시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나.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 명단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www.feynmanasset.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주식)	6493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649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649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961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9615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961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961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763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938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938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A175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803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7.02.07	최초설정
2007.11.20	종류형증권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009.05.02	자본시장통합법에 의거 ING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 명칭 변경
2010.03.16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및 과세조항 변경 기재 자산운용보고서 및 신탁업자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교부방법 변경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0.05.03	판매보수 인하
2010.09.06	종류 C-e 판매보수 인하 투자신탁의 해지 및 수시공시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1.01.10	- 이연판매보수(CDSC) 적용: 종류 C2, C3, C4, C5 수익증권 신설 - 기존 종류별 수익증권 명칭 변경: 종류C-)종류C1
2011.04.18	최근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투자대상자산 명확화 등
2012.06.22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법 개정(2011.8.4) 사항 반영 (수시공시 관련) 등
2013.05.02	외화자산에 업무 위탁 조항 삭제 및 직접운용 전략 명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비중(5% 이하-40% 이하) 선취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운용보수 인하 환헤지 관련 조항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3.05.21	종류C-p 클래스 추가
2014.01.07	자산운용회사 명칭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변경 등 -“ING자산운용”에서“맥쿼리투자신탁운용”으로 변경 -“ING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서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으 로 변경
2014.03.07	종류S 수익증권 신설,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자 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2013.8.29)사항, 소득세법 개정안 (연금저축 관련) 반영 등
2014.12.30	운용전문인력 변경 등
2015.04.08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등
2015.04.30	비교지수 변경 및 그에 따른 투자전략 문구 조정 등
2015.08.18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2.26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반영 및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7.02	펀드 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및 위험등급 변경
2016.10.21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
2017.09.06	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재무정보 업데이트 등
2018.03.12	자본시장법 제123조제3항제1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및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017.5.8) 사항 반영 (투자대상자산, 연금저축과세) 등
2018.06.19	투자신탁의 운용본부 기재
2018.09.04	운용전문인력 변경
2019.08.23	기존 종류별 수익증권 명칭 변경 (종류C-f→ 종류C-w)
2019.09.10	환위험관리전략 변경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반영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2020.09.30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2020.10.05 시행) 등
2021.05.13	자산운용회사 명칭 변경 및 이에 따른 펀드 명칭 변경 등 -“맥쿼리투자신탁운용”에서“파인만자산운용”으로 변경 -“맥쿼리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서 “파인만 파워아시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으 로 변경
2021.06.15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1.07.15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03.29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2.06.30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3.03.16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2023.2.20.시행) 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
2023.05.27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4.03.22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소득세법 개정사항(2024.01.01) 반영
2024.07.11	부책임용인력 추가
2024.09.1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24.03.01)반영 클래스D 등 관련 설명 개정(2024.08.01)반영
2025.03.21	최신 결산일 기준 정기갱신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개별투자자의 저축기간 혹은 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파인만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SIMPAC 빌딩 3층 (대표전화 : 02-3703-9800)

주)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

(2025년 2월 6일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 30 주식형) (%)				운용 경력 년수 (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주식운용인력〉										
오승훈	1991	책임 운용전문 인력	20	865	27.61	N/A	27.61	6.70	5.78	- 現파인만자산운용 기운용본부 - 밸류파트너스자산 운용 자산운용본부 (2019.03~2022.05)

										)
김주호	1993	부책임 운용인력	16	563	N/A	N/A	27.61	6.70	0.86	- 現파인만자산운용 기운용본부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성명	수 (개)	운용규모 (억원)
오승훈	1	119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기운용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인력”은 책임운용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인력	운용 기간
박진환	2021.07.15~2022.03.28
김승현	2022.03.29~2022.06.29
강동호	2022.06.30~2023.05.26
오승훈	2023.05.27~현재
부책임운용인력	운용 기간
권용성	2022.03.29~2023.03.15
김주호	2024.07.11~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증권 종류별 특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b>미징구(C)</b>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b>따라서 2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b>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b>온라인(e)</b>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b>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b>오프라인</b>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b>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b>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b>온라인 슈퍼(S)</b>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b>보수체감 (COSC)</b>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O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b>랩(w)</b>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고액(i)</b>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최초 납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개인연금 (p)</b>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차이점

종류	수수료			보수(연, %)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집합 투자	판매	신탁	일반 사무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2% 이내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5500	1.0000	0.0600	0.0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1)	-	-		0.5500	1.5000	0.0600	0.0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2)	-	-		0.5500	1.4000	0.0600	0.0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3)	-	-		0.5500	1.3000	0.0600	0.0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C4)	-	-		0.5500	1.2000	0.0600	0.0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	-	-		0.5500	1.1000	0.0600	0.0280

(C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0.5500	1.0000	0.0600	0.0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 (C-w)	-	-		0.5500	0.0000	0.0600	0.0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	-		0.5500	0.0500	0.0600	0.0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 (C-p)	-	-	-	0.5500	0.9500	0.0600	0.028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5500	0.3500	0.0600	0.0280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매3개월 후금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됩니다.

주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식(일본 제외)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① 주식	60% 이상 단. 해외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p>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아시아국가(일본제외)에 상장된 기업, 아시아국가(일본제외)의 기업 또는 아시아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및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다만 해외주식은 다음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다음 다목 내지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를 말한다.</p> <p>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p> <p>나. 「증권거래세법」제1조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p>

			다. 1호 가목 내지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별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라.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㉔	채 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이하 “채권”이라 한다)
㉕	자산 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㉖	어 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또는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㉗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㉘	장내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㉙	장외파생상품	투자제한 참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통화나 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㉚	집합투자증권 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㉛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범위에서 50% 이하
㉜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㉝	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㉞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및 환매조건부 매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있음.
⑩	기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적용예외 1)**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①~④의 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 ①~④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적용예외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⑤~⑩, 아래 “나. 투자제한” 사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단기대출, 계열사발행증권취득, 후순위채권 제한사항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상기의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동일법인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 간
	<p>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li>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권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함),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li> <li>- 시가총액비중 까지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li>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li> </ul>	
계열사 발행증권취득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기타 제한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
-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탄탄한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 국가 기업의 주식, 아시아 국가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 또는 아시아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일본 제외)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S&P/KRX Asia 100지수를 추종하는 동시에, 국가와 섹터 및 종목별 투자모멘텀 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의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동 지수를 효율적으로 추종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최적화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 지수 : S&P/KRX Asia 100 X 95% + call rate X 5%

- S&P/KRX Asia 100 지수는 다양한 글로벌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수 산출대상을 해외 거래소 상장주식으로 확대한 글로벌지수로서, 아시아 5개국(한국,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100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국은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H-Shares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지수에 대한 정보는 산출기관의 홈페이지(<http://www.krx.co.kr>) 등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Bloomberg Ticker: SPKRASU index

※ 단, 비교지수의 변경은 계약체결일에 따라 2015년 5월 2일자로 변경 적용됩니다.

(참고자료: 비교지수 국가별, 주요업종별 비중(2021.02.26.기준))

국가	S&P/KRX Asia 100 지수 (%)	주요업종	S&P/KRX Asia 100 지수 (%)
중국	37.2%	정보기술	32.1%
대한민국	24.8%	금융	21.6%
대만	20.9%	통신서비스	17.8%
홍콩	13.6%	임의소비재	10.9%
싱가포르	3.5%	헬스케어	3.7%

**(2) 적극적인 매매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종하여 플러스 알파(+α)를 추구합니다. 이 때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종하며 운용합니다.

**나. 환헤지 관련사항**

**① 환헤지 여부**

집합투자업자는 통화관련 장내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환헤지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환헤지전략의 실행여부 및 환헤지 실행비율 등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② 환헤지방법**

환헤지는 통화선물, 통화선도거래 및 FX스왑(외환 스왑)을 활용할 예정이며, 환헤지 방법은 거래비용 및 환 프리

미엄 및 디스카운트를 고려하여 선택할 계획입니다.

**㉑ 목표헤지비용 및 환헤지의 장단점**

외화 자산의 100%±10% 수준을 목표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환헤지 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헤지수단의 부재 또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일부 투자대상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전략을 실행하여도 이 투자신탁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감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환율간 상관관계, 개별국가 외환자금시장의 변화, 기타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화 및 개별 통화간의 변동성이 상이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헤지 전략에서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의 여러 통화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환헤지방법은 이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미달러화에 대해서만 환헤지하는 방법보다 거래수수료 등의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여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외화 자산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동 펀드는 달러 및 외국의 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구분	환헤지 비용(원) (2024.02.07 ~ 2025.02.06)	환헤지 비율(%) (2025.02.06 기준)
환헤지	-	97.18%

주) 환헤지 비용 및 효과는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 또는 헤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2.07 ~ 2025.02.06]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라. 아시아시장 경제 현황**

- 아래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GDP (2019년, 10억US\$)	GDP성장률 (2019년)	1인당 GDP (2019년, US\$)
중국	14,342.9	6.1%	10,262
대만	610.9	2.7%	25,893
홍콩	366.0	-1.2%	48,756
싱가폴	372.1	0.7%	65,233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

<b>손실위험</b>	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주식등 가격변동위험</b>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b>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b>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파생상품 투자위험</b>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b>장외파생상품 위험</b>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 시에는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 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b>환율변동에 따른 위험</b>	이 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해외자산의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변화로 인해 투자 결과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후 원화의 가치가 해외 투자 대상국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외화자산의 가치를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져 손실이 발생합니다.
<b>환헤지에 따른 위험</b>	환율변동에 따라 해외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b>부도 등의 위험</b>	주식, 채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추적오차 (tracking error)</b>	<b>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비교지수와 유사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니할</b>

<p><b>위험</b></p>	<p>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의 표시통화인 미달러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타 투자대상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도 환헤지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환헤지전략의 차이로 인해 비교지수의 수익률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과 비교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p>
<p><b>인덱스 투자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비교지수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즉, 시장수익률 하락시 수익률 하락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조정 등 별도의 노력을 수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b>국가위험</b></p>	<p>이 투자신탁은 해외(일본제외한 아시아시장)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p> <p>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p><b>오퍼레이션 위험</b></p>	<p>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그 위험이 국내 투자보다 더 높습니다.</p>
<p><b>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b></p>	<p>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p>
<p><b>자금송환 위험</b></p>	<p>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하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p>
<p><b>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b></p>	<p>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발행한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p>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b>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 및 미국납세의무자 (US Taxpayers)</b></p>	<p><b>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b></p> <p>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FATCA”)은 미국 고용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HIRE))의 일환으로 미국 의회가 2010년에 제정한 법률입니다. FATCA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 지역에 금융자산 및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 준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p> <p>FATCA는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 그리고 펀드에 대한 서비스제공자들의 등록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보고 및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 요구사항의 한 예를 보면, 펀드 내 특정유형의 투자자들에게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관</p>

	<p>계자들이 FATC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미국에서 그 원천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증권의 처분을 통한 총수익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특정유형의 지급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펀드 및/또는 하위펀드가 FATCA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p> <p>FATCA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펀드는 특정 투자자의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들에 대한 특정 지급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펀드는 또한 펀드의 단독 재량으로 투자자의 보유지분을 강제로 환매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도록 투자자들은 펀드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p> <p>또한,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펀드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펀드 및 하위펀드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이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IGA))을 체결하는 경우, 정부는 FATCA 필요조건들(펀드 및 하위펀드가 따라야 하는 국내 법령들의 수정, 개정, 면제 등 포함)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IGA가 체결되는 경우, 펀드 및 하위펀드는 해당 IGA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 법령도 적용받게 됩니다.</p> <p>투자자들은 FATCA 및 IGA로 인하여 그들의 세금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p> <p><b>미국 납세의무자(US Taxpayers)</b></p> <p>"미국 납세의무자"라 함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미국 법률 또는 미국의 특정 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미국에서 설립된 파트너십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탁의 경우, 만약 (i) 미국의 어떤 법원이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탁의 관리에 관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명령이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미국 납세자들이 신탁이나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인 사망자의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trust)도 미국납세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미국 세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자와 미국 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하에서는 미국 납세의무자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p><b>유동성 위험</b></p>	<p>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b>환매연기위험</b></p>	<p>투자대상 자산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증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증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b>환매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b></p>	<p>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의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사이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b>펀드규모위험</b></p>	<p>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또한,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해외수탁운용회사와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b>과세제도 변경위험</b></p>	<p>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p>
<p><b>해지 위험</b></p>	<p>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p>
<p><b>증권대차거래 위험</b></p>	<p>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여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은 **30.69%**로, 파인만자산운용의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아래)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6단계 등급 체계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닌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일본제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설정이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추후 매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인만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 기준표]**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 매우높은 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 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낮은 위험
97.5% VaR	<u>50%</u> 초과	<u>50%</u> 이하	<u>30%</u>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sqrt{250}$ )를 곱해 산출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파인만자산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

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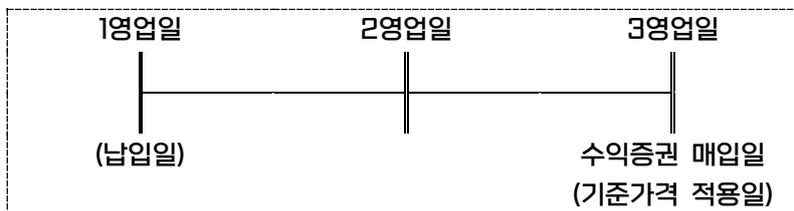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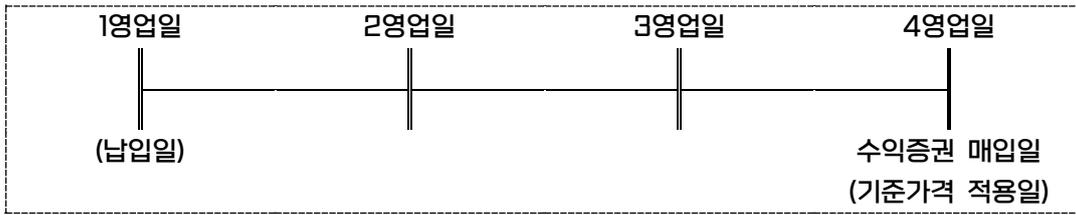
구 분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종류C4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인터넷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집합투자기구 및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100억원 이상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자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만,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은 매입청구일을 기준으로 2020.10.05부터 시행합니다.)



(나) 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만,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변경은 매입청구일을 기준으로 2020.10.05부터 시행합니다.)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2011년 1월 10일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일괄 전환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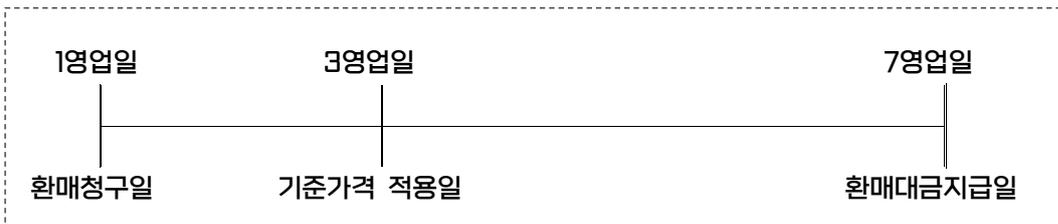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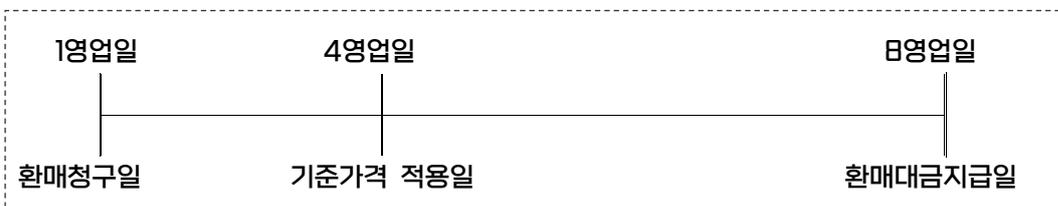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가)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 환매대금은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상기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투자대상국의 장기 연휴 등으로 환매대금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빈번한 환매가 일어나는 경우 포트폴리오 재조정, 거래비용 및 각종기회비용 등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투자자가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환매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주) 환매수수료는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 ①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7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5영업일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을 부분환매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237조 제7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정상자산에 대한 기준가격을 계산하여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6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7조 제5항에 따라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7)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환매 가능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 종류 C-p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다.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 (1)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D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 ① 종류D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D2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② 종류D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D3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③ 종류D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D4 수익증권으로 전환
- ④ 종류D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종류D5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자동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3)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4)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다만,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매수일을 기준으로 전환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전환과 관련하여 환매수수료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 ②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 ③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추가 납입이 발생하였고, 이 추가납입분에 대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 : 환매수수료 부과

(6)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위 전환방법의 (가)에 불구하고 2011년 1월 10일에 종류 D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본 신탁계약 시행일 이전 종류D 수익증권을 매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D2부터 종류 D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30조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D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체계가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은 불가 합니다.

※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이후 전환하는 경우 판매사간 전산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판매사별로 매영업일 혹은 월별 특정일 또는 주별 특정일 등 전환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b>공시장소</b>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feynmanasset.com)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b>공시주기</b>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b>공시방법</b>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b>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b>	종류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평가할 때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채권은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b>집합투자증권</b>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b>외화표시유가증권으로 상장주식 또는 상장채권</b>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b>외국집합투자증권</b>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b>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b>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b>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b>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 고시전에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 이용 가능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2% 이내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형(C-i)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	환매금액의	90일미만: 이익	-

		0.15%이내	금의 70%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됩니다.

주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지급비율(연,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총보 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 기구 보 수 포함)	증권거래 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 인형(A)	0.5500	1.0000	0.0600	0.0280	1.6380	0.7685	2.4065	1.9200	2.4065	0.0203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보수체감형(C1)	0.5500	1.5000	0.0600	0.0280	2.1380	-	2.8593	1.9200	2.8593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보수체감형 (C2)	0.5500	1.4000	0.0600	0.0280	2.0380	-	2.0380	1.9200	2.038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보수체감형 (C3)	0.5500	1.3000	0.0600	0.0280	1.9380	-	1.9380	1.9200	1.938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보수체감형 (C4)	0.5500	1.2000	0.0600	0.0280	1.8380	-	1.8380	1.9200	1.838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보수체감형 (C5)	0.5500	1.1000	0.0600	0.0280	1.7380	0.7692	2.5072	1.9200	2.5072	0.0202
수수료미징구-온라 인형(C-e)	0.5500	1.0000	0.0600	0.0280	1.6380	0.7686	2.4066	1.1800	2.4066	0.0203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랩형(C-w)	0.5500	0.0000	0.0600	0.0280	0.6380	-	0.6380	-	0.638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고액형(C-i)	0.5500	0.0500	0.0600	0.0280	0.6880	-	0.6880	-	0.6880	-
수수료미징구-오프 라인-개인연금형(C-	0.5500	0.9500	0.0600	0.0280	1.5880	0.7661	2.3541	1.8400	2.3541	0.0202

p)										
수수료후취-온라인 슈퍼형(S)	0.5500	0.3500	0.0600	0.0280	0.9880	0.7687	1.7567	-	1.7567	0.0203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 시	-	-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4.02.07 ~ 2025.02.06]

※ 기타비용 :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약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11,366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4.02.07 ~ 2025.02.06]

※ 증권거래비용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매매수수료, 대차관련수수료, REPO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매매수수료, 해외파생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299

※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주3) 총보수 및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두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두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6)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약비용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0. 지수사용료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투자기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364	614	870	1,402	2,8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1)	293	592	898	1,527	3,2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257	520	790	1,349	2,87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47	500	759	1,297	2,7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41	489	743	1,271	2,71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180	366	558	960	2,08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S수익증권은 수익증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주3) 종류A수익증권과 종류C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2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년 10월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문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문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 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시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주1)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재무제표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며 참조용으로 기재됩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0기( 2024.02.07 - 2025.02.06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9기( 2023.02.07 - 2024.02.06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8기( 2022.02.07 - 2023.02.06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 아래 재무정보는 운용펀드 기준입니다.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파워아시아(주식)

[단위: 원]

항 목	재무상태표		
	제 20기	제 19기	제 18기
	( 2025.02.06 )	( 2024.02.06 )	( 2023.02.06 )
운용자산	1,438,244,524	1,526,574,527	1,746,179,274
증권	1,390,892,008	1,451,085,175	1,640,944,213
파생상품	-469,239	-23,331,113	54,188,076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7,821,755	98,820,465	51,046,98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623,628	70,425,481	12,421,023
자산총계	1,443,868,152	1,597,000,008	1,758,600,29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019,939	139,048,094	21,928,153
부채총계	6,019,939	139,048,094	21,928,153
원본	1,153,034,779	1,468,367,858	1,532,664,555
수익조정금	-63,117,200	-5,769,443	-1,644,155,411
이익잉여금	347,930,634	-4,646,501	1,848,163,000
자본총계	1,437,848,213	1,457,951,914	1,736,672,144

파워아시아(주식)

[단위: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0기	제 19기	제 18기
	2024.02.07 - 2025.02.06	2023.02.07 - 2024.02.06	2022.02.07 - 2023.02.06
운용수익	379,907,999	-169,000,323	-281,291,325
이자수익	1,306,772	2,132,918	903,958
배당수익	45,069,638	55,018,696	68,158,002
매매/평가차익(손)	333,531,589	-226,151,937	-350,353,285
기타수익	151,629	164,536	4,391
운용비용	24,439,763	25,727,493	28,752,289
관련회사 보수	24,439,763	25,727,493	28,752,289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64,883,766	103,751,274	142,689,153
당기순이익	290,736,099	-298,314,554	-452,728,376
매매회전율	73.70	31.62	93.23

주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18기 0백만원 발생)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20기 0백만원, 19기 0백만원, 18기 0백만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파워아시아(주식)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 2024.02.07 - 2025.02.06 )			전기( 2023.02.07 - 2024.02.06 )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468	0.2990	0.0639	327	0	0.0613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43	0	0.0701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468	0	0.0639	370	0	0.0623

주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파워아시아(주식)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95,405	468	635	73.7	32.06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20기( 2025.02.06 )		제19기( 2024.02.06 )		제18기( 2023.02.06 )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현금및예치금		47,821,755		98,820,465		51,046,985
1. 현금및현금성자산	47,821,755		98,820,465		51,046,985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1,390,892,008		1,451,085,175		1,640,944,213
1. 지분증권	1,217,364,960		1,256,005,360		1,471,909,13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73,577,782		136,918,043		169,353,504	
4. 기타유가증권	-50,734		58,161,772		-318,421	
<b>파생상품</b>		-469,239		-23,331,113		54,188,076
1. 파생상품	-469,239		-23,331,113		54,188,076	
<b>부동산과 실물자산</b>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5,623,628		70,425,481		12,421,02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57,989,913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0,659		28,677		16,036	
4. 미수배당금	1,081,939		1,221,105		2,683,820	
5. 기타미수입금			8,863,374		7,419,777	
6. 기타자산	4,531,030		2,322,412		2,301,390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1,443,868,152		1,597,000,008		1,758,600,297
<b>부 채</b>						
<b>운 용 부 채</b>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6,019,939		139,048,094		21,928,153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57,451,553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7,691,494		14,813,397	
4. 수수료미지급금	5,999,081		6,297,816		6,916,951	
5. 기타미지급금			57,482,252			
6. 기타부채	20,858		124,979		197,805	
<b>부 채 총 계</b>		6,019,939		139,048,094		21,928,153
<b>자 본</b>						
1. 원 본	1,153,034,779		1,468,367,858		1,532,664,555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84,813,434		-10,415,944		204,007,589	
(발행자수 당가: 1,153,034,779 좌		347,930,634		-4,646,501		1,848,163,000
전기: 1,468,367,858 좌		-63,117,200		-5,769,443		-1,644,155,411
전전기: 1,532,664,555 좌)						
(기준가격 당가: 1,420.85 원						
전기: 1,112.66 원						
전전기: 1,285.21 원)						
<b>자 본 총 계</b>		1,437,848,213		1,457,951,914		1,736,672,144
<b>부 채와 자본총계</b>		1,443,868,152		1,597,000,008		1,758,600,297

다. 손익계산서

과 목	제20기( 2024.02.07-2025.02.06 )		제19기( 2023.02.07-2024.02.06 )		제18기( 2022.02.07-2023.02.06 )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46,528,039		57,316,150		69,066,351
1. 이 자 수 익	1,306,772		2,132,918		903,958	
2. 배당금수익	45,069,638		55,018,696		68,158,002	
3. 수수료수익	151,629		164,536		4,391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611,981,885		137,243,880		372,813,681
1. 지분증권매매차익	126,784,797		56,374,105		41,480,841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293,830,656					
5. 외환거래/평가차익	187,420,456		69,320,928		312,350,847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945,976		11,548,847		18,981,993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278,450,296		363,395,817		723,166,966
1. 지분증권매매차손	46,368,520		28,720,391		144,199,255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201,139,411		193,364,507	
5. 외환거래/평가차손	229,852,136		129,287,115		373,355,653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2,229,640		4,248,900		12,247,551	
<b>운 용 비 용</b>		624,964,452		1,153,279,917		1,724,116,502
1. 운용수수료	8,085,567		8,489,817		9,488,563	
2. 판매수수료	15,472,580		16,312,084		18,229,216	
3. 수탁수수료	881,616		925,592		1,034,510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600,524,889		1,127,552,424		1,695,364,213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244,904,824		-1,322,115,704		-2,005,403,436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212400205		-0.900398151		-1.30844249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2	2	0	0	1	1	2	3
2023.02.07 - 2024.02.06	3	3	0	0	0	0	2	2
2022.02.07 - 2023.02.06	3	4	0	0	1	1	3	3

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D)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0	0	0	0	0	0	0	0
2023.02.07 - 2024.02.06	0	0	0	0	0	0	0	0
2022.02.07 - 2023.02.06	0	0	0	0	0	0	0	0

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2)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0	0	0	0	0	0	0	0
2023.02.07 - 2024.02.06	0	0	0	0	0	0	0	0

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3)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0	0	0	0	0	0	0	0
2023.02.07 - 2024.02.06	0	0	0	0	0	0	0	0
2022.02.07 - 2023.02.06	0	0	0	0	0	0	0	0

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4)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0	0	0	0	0	0	0	0

바.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8	8	0	0	2	2	6	8
2023.02.07 - 2024.02.06	8	10	0	0	1	1	8	8
2022.02.07 - 2023.02.06	9	12	0	0	1	1	8	10

사.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4	3	0	0	1	1	3	3
2023.02.07 - 2024.02.06	4	4	0	0	0	0	4	3
2022.02.07 - 2023.02.06	4	4	0	0	0	0	4	4

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0	0	0	0	0	0	0	0
2023.02.07 - 2024.02.06	0	0	0	0	0	0	0	0
2022.02.07 - 2023.02.06	0	0	0	0	0	0	0	0

자.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단위 : 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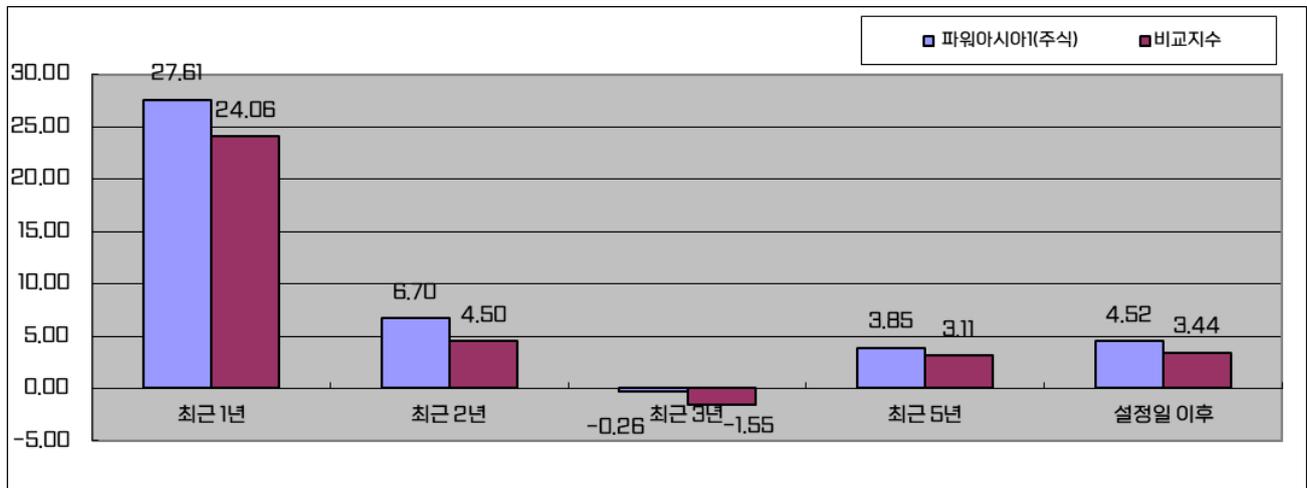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4.02.07 - 2025.02.06	0	0	0	0	0	0	0	0
2023.02.07 - 2024.02.06	0	0	0	0	0	0	0	0
2022.02.07 - 2023.02.06	0	0	0	0	0	0	0	0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가. 연평균수익률(세전 기준)



\* 운용 펀드 기준

\* 아래의 비교지수는 MSCI AC Asia ex Japan Index X 95% + call rate X 5% 기준이며, 2015.05.02부터 S&P/KRX Asia 100 X 95% + call rate X 5%으로 변경됩니다.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02.07 ~ 25.02.06	23.02.07 ~ 25.02.06	22.02.07 ~ 25.02.06	20.02.07 ~ 25.02.06	07.02.07 ~ 25.02.06
파워아시아 1(주식)	27.61	6.70	-0.26	3.85	4.52
비교지수	24.06	4.50	-1.55	3.11	3.44
수익률변동성(%)	18.67	17.17	18.30	18.98	18.22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5.57	4.97	-1.90	2.16	2.69
비교지수	24.06	4.50	-1.55	3.11	3.44
수익률변동성(%)	18.67	17.17	18.30	18.98	18.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5.57	4.97	-1.90	2.16	0.96
비교지수	24.06	4.50	-1.55	3.11	2.03
수익률변동성(%)	18.67	17.17	18.30	18.98	17.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형(C5)	25.44	4.87	-2.00	2.06	2.15

비교지수	24.06	4.50	-1.55	3.11	2.93
수익률변동성(%)	18.67	17.17	18.30	18.98	16.6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5.63	5.03	-1.84	2.22	3.24
비교지수	24.06	4.50	-1.55	3.11	3.87
수익률변동성(%)	18.67	17.17	18.30	18.98	17.0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26.39	5.67	-1.24	2.83	3.73
비교지수	24.06	4.50	-1.55	3.11	3.84
수익률변동성(%)	18.67	17.17	18.30	18.98	17.07

주1) 비교지수 : S&P/KRX Asia 100 Index X 95% + call rate X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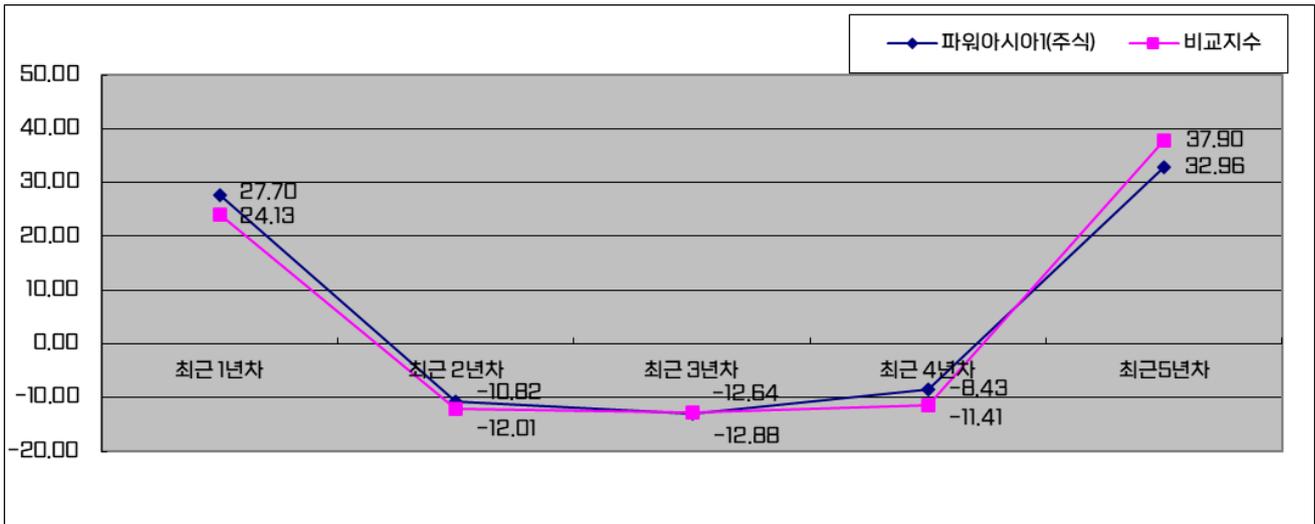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 기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운용 펀드 기준

\* 아래의 비교지수는 MSCI AC Asia ex Japan Index X 95% + call rate X 5% 기준이며, 2015.05.02부터 S&P/KRX Asia 100 X 95% + call rate X 5%으로 변경됩니다.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4.02.07 ~ 25.02.06	23.02.07 ~ 24.02.06	22.02.07 ~ 23.02.06	21.02.07 ~ 22.02.06	20.02.07 ~ 21.02.06
파워아시아 1(주식)	27.70	-10.82	-12.88	-8.43	32.96
비교지수	24.13	-12.01	-12.64	-11.41	37.9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5.65	-12.28	-14.33	-9.94	30.91
비교지수	24.13	-12.01	-12.64	-11.41	37.9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5.64	-12.28	-14.33	-9.94	30.91

비교지수	24.13	-12.01	-12.64	-11.41	37.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형(C5)	25.52	-12.37	-14.42	-10.03	30.79
비교지수	24.13	-12.01	-12.64	-11.41	37.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25.71	-12.23	-14.28	-9.88	30.99
비교지수	24.13	-12.01	-12.64	-11.41	37.9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26.47	-11.70	-13.75	-9.34	31.73
비교지수	24.13	-12.01	-12.64	-11.41	37.90

주1) 비교지수 : S&P/KRX Asia 100 Index X 95% + call rate X 5%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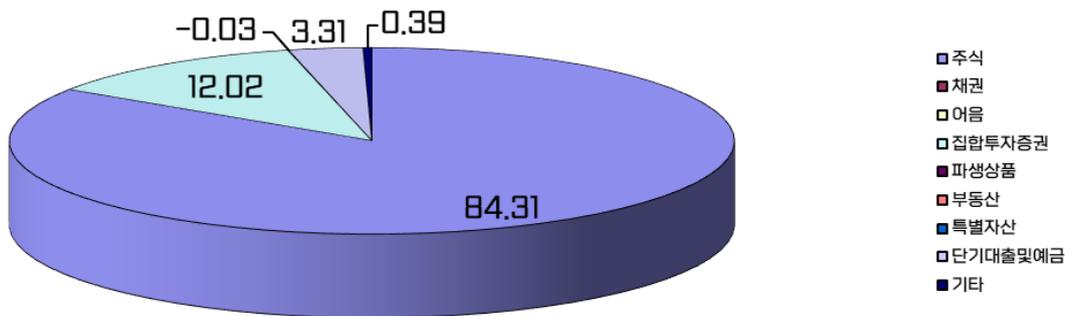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 (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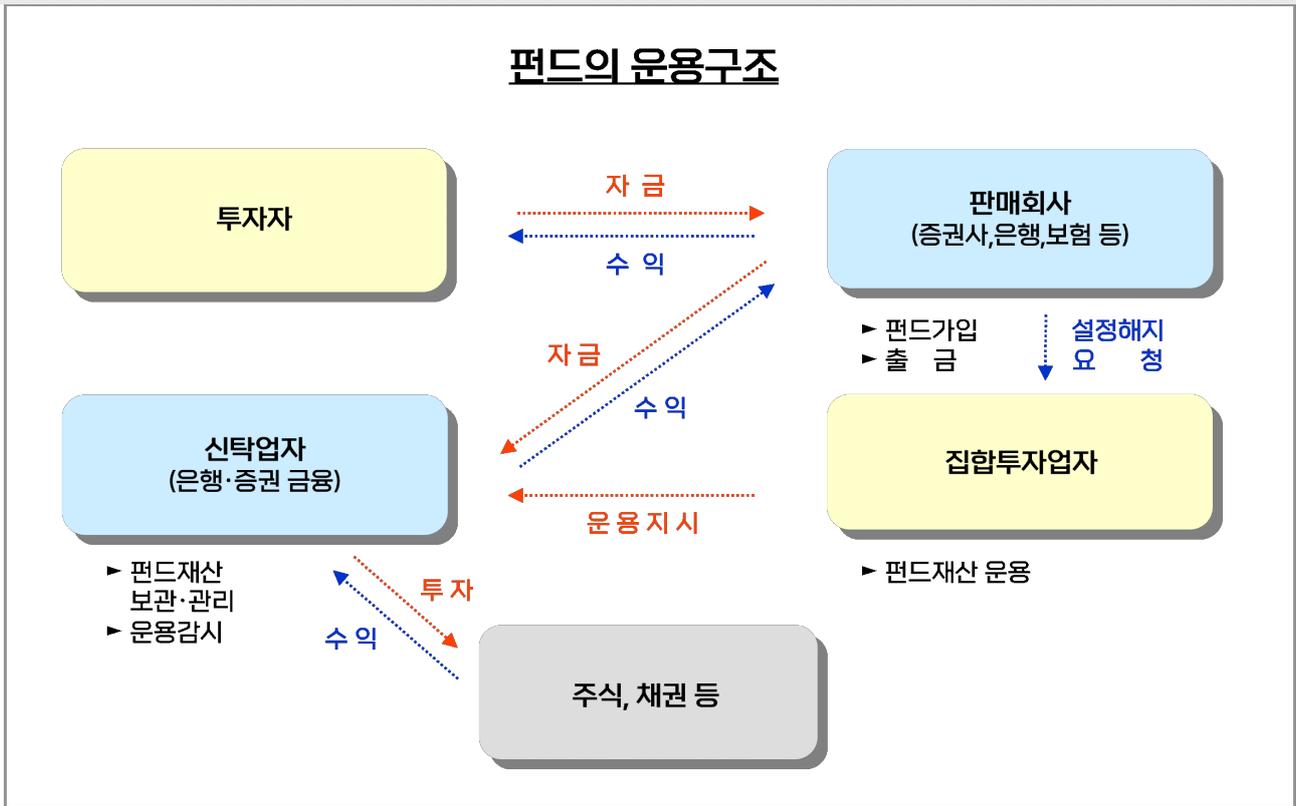
(2025.02.06기준 / 단위: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	0	0	0	0	0	0	0	0	0	0	2
	(85.8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67)	(2.49)	(16.00)
USD	2	0	0	2	0	0	0	0	0	0	0	4
	(51.62)	(0.00)	(0.00)	(43.22)	(0.00)	-(0.21)	(0.00)	(0.00)	(0.00)	(5.37)	(0.00)	(28.00)
HKD	7	0	0	0	0	0	0	0	0	0	0	7
	(99.95)	(0.00)	(0.00)	(0.00)	(0.00)	(0.05)	(0.00)	(0.00)	(0.00)	(0.00)	(0.00)	(48.00)
SGD	1	0	0	0	0	0	0	0	0	0	0	1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00)
합계	12	0	0	2	0	0	0	0	0	0	0	14
	(84.31)	(0.00)	(0.00)	(12.02)	(0.00)	-(0.03)	(0.00)	(0.00)	(0.00)	(3.31)	(0.39)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b>회사명</b>	파인만자산운용(주)
<b>주소 및 연락처</b>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SIMPAC 빌딩 3층 연락처 : 02-3703-9800 인터넷홈페이지 : www.feynmanasset.com
<b>회사 연혁</b>	<p><b>&lt;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gt;</b>                      1988.04.06 한국증권투자자문(주) 설립                      1997.07.08 외환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                      1999.05.28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 변경</p> <p><b>&lt;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gt;</b>                      1989.10.05 범한투자자문(주) 설립                      1996.08.24 장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1998.12.29 국은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2.05.09 Morgan stanley group에 매각                      2002.05.28 랜드마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05.04.26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주)과 합병</p> <p><b>&lt;ING 자산운용 주식회사&gt;</b>                      2006.09.08 ING자산운용(주) 설립                      2007.10.01 랜드마크자산운용(주)과 합병                      2013.11.27 Macquarie Investments 3 Limited의 인수</p> <p><b>&lt;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gt;</b>                      2013.12.27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으로 상호변경                      2021.04.09 파인만1호주식회사가 100% 지분인수</p>

자본금	(파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2021.04.09 파인만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15,049,570,000원
주요주주현황	파인만1호주식회사: 지분을 100%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업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억원)**

재무상태표(억원)			요약 손익계산서(억원)		
계정과목	'23.12.31	'22.12.31	계정과목	'23.12.31	'22.12.31
현금및예치금	46.4	68.7	영업수익	48.2	29.5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46.6	16.8	영업비용	38.7	42.6
유형자산	1.3	4.5			
무형자산	1.5	1.6			
기타자산	10.4	6.0			
<b>자산총계</b>	<b>106.2</b>	<b>97.6</b>	영업이익(손실)	9.5	-13.1
충당부채	0.9	0.9	영업외수익	-	0.3
기타부채	3.7	4.5	영업외비용	-	0.2
<b>부채총계</b>	<b>4.6</b>	<b>5.4</b>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9.5	-13
자본금	150.5	150.5	법인세비용	-	-4.1
자본잉여금	25.2	25.2	당기순이익(손실)	9.5	-8.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	-2.2	기타포괄이익(손실)	-0.1	-
이익잉여금(결손금)	-71.8	-81.3			
<b>자본총계</b>	<b>101.6</b>	<b>92.2</b>	당기총포괄이익(손실)	9.4	-8.9

**라. 운용자산 규모(2025.02.06 현재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835	36	358	0	16	463	0	330	5,530	181	1,454	9,20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해외 업무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b>회 사 명</b>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b>주소 및 연락처</b>	주소 :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연락처 : 02-2004-0123
<b>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b>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신탁업자의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④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

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절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의 여부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위탁)**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 ②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 ③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b>회 사 명</b>	신한펀드파트너스(주)
<b>주소 및 연락처</b>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현대차증권 18~20층) 연락처 : 02-2180-0400
<b>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b>	www.shinhanfundpartners.com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및 기준가격의 통보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NICE P&I(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4층 ☎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도동 35-4 ☎ 02-3215-1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 대로70길 19(여의도동) 4층 ☎ 02-398-39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oreabp.com	www.bond.co.kr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 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 총좌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 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관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취득자의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

사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고(당사 홈페이지 공시 등)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 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가 발생한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집합투자업자가 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

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feynmanasset.com](http://www.feynmanasset.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 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주식 관련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중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1)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li> <li>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li> <li>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li> </ol> ② 선정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li> <li>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li> <li>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li> <li>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li> <li>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li> <li>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li> </ol>

	<p>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li> <li>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li> <li>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li> </ol>
<p>〈장내파생상품거래〉</p>	<p>〈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b>집합투자업자</b>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 증권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b>펀드 혹은 집합투자기구</b>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고 불립니다.
<b>신탁업자</b>	투자신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b>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b>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b>개방형(집합투자기구)</b>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b>폐쇄형(집합투자기구)</b>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b>추가형(집합투자기구)</b>	이미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b>단위형(집합투자기구)</b>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b>모자형(집합투자기구)</b>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b>종류형(집합투자기구)</b>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b>증권집합투자기구</b>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b>금리스왵</b>	금리스왵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왵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b>기준가격</b>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b>비교지수</b>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b>신탁보수</b>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p><b>성과보수</b></p>	<p>성과보수는 집합투자계약(또는 계약)에 의거 펀드의 성과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추가적으로 보수(성과보수)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를 성과보수가 없는 펀드와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 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b>레버리지효과</b></p>	<p>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p>
<p><b>선물환거래</b></p>	<p>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p>
<p><b>수익자총회</b></p>	<p>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투자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b>수익증권</b></p>	<p>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는 의미입니다.</p>
<p><b>수탁고</b></p>	<p>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p>
<p><b>실물자산</b></p>	<p>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등을 의미합니다.</p>
<p><b>원천징수</b></p>	<p>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p>
<p><b>자산유동화증권</b></p>	<p>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p>
<p><b>전환사채</b></p>	<p>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p>
<p><b>주식워런트</b></p>	<p>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거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p>
<p><b>판매수수료</b></p>	<p>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p>

<b>설정</b>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b>해지</b>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b>환매</b>	고객이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선취수수료</b>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b>후취수수료</b>	펀드 환매 시 수익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b>환매수수료</b>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b>환매조건부채권</b>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b>환헤지</b>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